



「2024년 상반기 경찰공무원시험대비」

## 형사법 난이도별 모의고사 및 풀이(7)

| 오상훈 교수 | 박문각 경찰 노량진학원



※ QR코드를 통해  
"형사법의 끝판  
왕" 형사법 오상  
훈 교수의 강의  
일정 확인할 수  
있습니다.

**25.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**

- Ⓐ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도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.
- Ⓑ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기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'증여'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.
- Ⓒ 종종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개인 소유로 신고하여 토지 대장에 올린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.
- Ⓓ 빌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·비치하게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.

- ① Ⓚ Ⓛ ② Ⓛ Ⓜ  
③ Ⓛ Ⓜ ④ Ⓛ Ⓝ

난이도 : 상 출제영역 :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
[해설] 정답 : ④

- Ⓐ [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]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(이하 위 두 죄를 합쳐 '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'라 한다)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.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, 회사로서의 인적·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 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(대판 2020.2.27, 2019도 9293). ∵ 등기관은 회사설립에 관한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제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심사할 권한은 없고, 회사설립의 실제 의도나 목적을 심사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으며, 회사설립등기가 발기인 등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을 공시하는 것도 아니므로
- Ⓑ 대판 2007.11.30, 2005도9922 ∵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기를 잠탈할 목적으로 증여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는 의도하에 체결된 경우,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
- Ⓒ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효력이 없는 토지대장은 위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(대판 1988.5.24, 87도2696).
- Ⓓ 대판 2012.4.26, 2009도5786 ∵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

**26.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**

- 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집행관과 달리 집행관에게 채용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할 뿐, 집행관을 대신하거나 그와 독립하여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,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.
- Ⓑ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상 정비사업조합의 임

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,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'공무원'으로 보아야 한다.

- ③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, 나아가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.
- ④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,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,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
난이도 : 중 출제영역 :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
[해설] 정답 : ③

- Ⓐ 대판 2011.3.10, 2010도14394
- Ⓑ 대판 2016.1.14, 2015도15798 ∵ 사실상 공무원(조합임원)
- Ⓒ (X)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마수성을 그 보호법적으로 하고 있고,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,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,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(대판 2000.1.21., 99도4940).
- Ⓓ (O) [아파트무상대여사건] 대판 2015.10.15, 2015도6232

**27.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**

- Ⓐ 甲은 자신이 마치 乙인 것처럼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하였다.
- Ⓑ 甲은 乙에 대한 사기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, 乙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乙이 丙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乙이 丙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乙의 범죄事實을 은닉하였다.
- Ⓒ 甲은 법원에 대한 거처분 신청 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.
- Ⓓ 甲은 시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.

난이도 : 중 출제영역 :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
[해설] 정답 : ①

- Ⓐ 피고인이 마치 그의 형인양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원동기장치 자전기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(대판 1986.9.9, 86도1245).
- Ⓒ (X)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

고 할 수 없다(대판 1971.3.9, 71도186).

Ⓓ (X)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, 거처분 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(대판 2012.4.26, 2011도17125).

Ⓔ (X) 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신청서 기재와 부속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허가요건을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에 대하여 진실한 것으로 기법에 믿은 나머지 인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(대판 1988.5.10, 87도2079). ↔ [허위의 진단서 제출사건] 대판 2002.9.4, 2002도2064).

**28.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**

- Ⓐ 위증죄와 모해위증죄가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'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'에 해당한다.
- Ⓑ 위증죄와 무고죄에서의 '허위'의 개념은 동일하다.
- Ⓒ 증인이 1회 또는 수회의 기일에 걸쳐 이루어진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·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·시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.
- Ⓓ 피고인이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.
- Ⓔ 형법 제153조(자백, 자수)에서 정한 '재판이 확정되기 전'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.

- ① Ⓛ Ⓛ ② Ⓛ Ⓛ  
③ Ⓛ Ⓛ ④ Ⓛ Ⓛ

난이도 : 중 출제영역 :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
[해설] 정답 : ③

- Ⓐ (O) [모해위증교사사건] 대판 1994.12.23, 93도1002
- Ⓒ (X) 위증죄와 무고죄에서의 '허위'의 개념은 다르다.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,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(대판 1991.10.11, 91도1950). ※ 객관설 /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(대판 1989.1.17, 88도580). ※ 주관설
- Ⓓ (O) 대판 2010.9.30, 2010도7525 ∵ 진술이 철회·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이므로
- Ⓔ (X)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,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(대판 1998.2.10, 97도2961).

- Ⓕ (O) 형법 제157조,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로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.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①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②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(대판 2018.8.1, 2018도7293).